

# 보건복지부

## 금연종합대책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청사,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의 '완전금연건물' 안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천석 이상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관람석,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의 이용자 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구역 안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모두 철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연종합대책을 확정, 건강증진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월 20일 밝혔다.

### 1. 정부청사·의료기관 등 완전금연

이 대책에 따르면 완전 금연건물 지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유주가 희망하는 건물은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도 금연 및 흡연공간을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시·도 조례를 통해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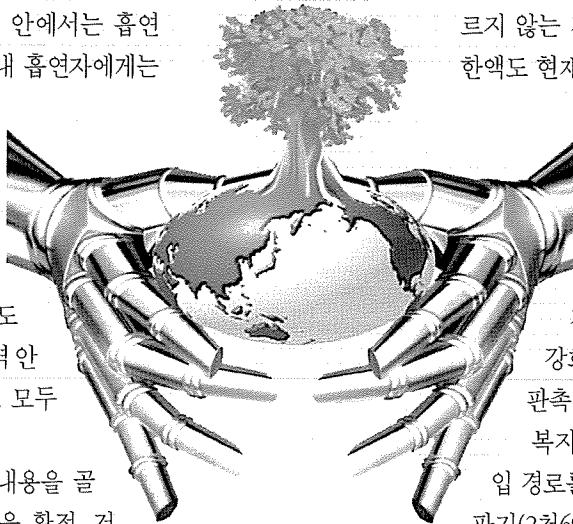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완전 금연건물 지정이나 흡연공간 구분 운영에 따르지 않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현재의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니코틴, 타르 등 유해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고, 담배품목별 잡지광고 횟수 제한이 연간 60회에서 30회로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판촉 활동도 선연적으로 금지된다.

복지부는 또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담배자판기(2천694대)의 30~40%를 차지하는 흡연구역 내 자판기 설치를 전면 금지(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흡연예방교육 내용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삽입하고 초·중·고교생과 군장병에 대한 금연교육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은 청소년 흡연 차단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은 청소년 흡연 차단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침'이라고 말했다.

## 2. '금연공간'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 흡연이 법률적으로 규제되는 '금연공간'이 대폭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완전금연건물' 제도의 도입으로, 흡연공간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현재의 금연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내 흡연 규제가 강화된다.



우선 부·처·청을 불문하고 모든 정부청사가 '완전금연건물'로 지정돼 일단 건물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교, 의료기관 건물 안에서도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어 애연가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 만화방, 노래방 등 대중 유흥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자 공간 안에서는 흡연이 규제된다.

이밖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공간으로 규정돼 있는 지하도내 상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공간, 국내선항공기, 철도차량 내부, 도시철도 지하역사 및 차량 내부, 건물 승강기 등이 계속 금연공간으로 규제됨은 물론이다.

또 3천㎡ 이상 사무용건물, 2천㎡ 이상 복합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1

천㎡ 이상 학원, 관광숙박업소,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에서는 제한된 흡연공간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그러나 논란거리도 없지 않으며 그중 하나가 소유주 희망에 따라 완전금연 건물 지정을 허용하기로 한 대목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개인(건물 소유주)의 기호와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는 관점에

서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천석 이상 실외 스포츠경기장 관람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도 실외공간 흡연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의문시되나, 내년 월드컵 대회를 '금연 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연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경찰 이외에 자치단체 공무원과 노인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에게까지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도 '교통법규 위반자 카메라 신고'와 같이 흡연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7]

(자료출처 : 연합뉴스)

1천석 이상  
실외 스포츠경기장  
관람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도  
실외공간 흡연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의문시되나,  
내년 월드컵 대회를  
'금연 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볼 수 있다.